

Business Regulation and Tax analysis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 Open for Business

국무원은 최근 중국(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의 구체적인 윤곽을 발표하였으며, 이 시범지구는 2013년 9월 29일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중국 경제사에서 이번 시범지구의 잠재적인 파급효과는 등샤오핑에 의해 1980년에 추진된 심천특별경제지구의 출범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해 시범지구 실시는 향후 경제를 개방을 가속화하고 다시 균형을 잡는 급진적인 경제 개혁이 향후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일련의 정책들이 시범지구에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것이 성공한다면 향후에 중국 전체에 해당 정책이 확대될 것입니다. 시범 방안들의 성공은 또한 자유무역협상(FTA)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심천특별경제구 및 이와 유사한 특별구가 "인센티브"(주로 사업세, 관계 및 증치세)에 초점을 둔 것임에 반해,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는 시범지역으로서 국제적인 표준을 갖춘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창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책은 재화를 수입, 가공하고 무관세로 수출하는 전형적인 자유무역지대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RMB의 완전한 태환과 금융시장의 개방을 실험해 보기 위한 토대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많은 해외투자자들은 이미 예상되는 상해자유무역지구 개혁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시험규정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에 따라 변화의 물결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hat's new? 변화된 사항

이번 계획방안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해외투자자에 대한 승인 요구사항에 대한 파격적인 완화와 간소화: 간단하게 말하면, 해외 투자자는 더이상 허가가 아닌 "국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고 "부정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활동에 투자하는 것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투자관련 문제에서 사전

승인은 더이상 요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신고 사항이 생길 것입니다. 해외 투자자는 점진적으로 6 개의 현대적 서비스 분야 - 금융서비스, 해운 및 물류 서비스, 상업 및 무역 서비스, 전문가 서비스, 문화 서비스 및 공공분야 서비스 - 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것이 허용될 것입니다.

- 특정 국내 투자자에 대한 사전승인 요구 철폐: 규정된 기준 (아마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승인 한도) 이하의 해외투자를 하려는 중국내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간단한 보고만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전 승인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 시범지구를 국제무역, 해운과 물류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 시범구역 내의 관세 절차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범 사례들을 참조해서 기존 보다 업데이트되고 간소화될 것입니다.
- 시범지구를 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들: 금융시스템의 정비는 이자율 자유화와 RMB 의 완전한 태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 특히 상품, 해운, 무역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개발이 장려될 것이며, 글로벌/지역의 결제 및 재무 센터와 펀드 운영 사업의 설립 또한 장려될 것입니다.
- 경쟁력 있는 조세환경: 이번 시범지구의 주요 핵심은 아니지만, 경쟁력 있는 조세 혜택이 도입될 것입니다.
- 시범지구 목적에 맞도록 규제의 조정: 이번 시범지구는 상해지방정부에 의해 관리됩니다. 시범지구의 목적과 배치되는 법규는 아마도 시범지구에서는 그 적용이 폐지되고, 시범지구 내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의 영향에 대한 우리의 전망과 예상되는 개혁과 관련 실행 방안들의 상세내역은 이하 부록에서 설명합니다.

Deloitte 의 전망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를 출범함에 있어서, 정부는 "게임의 변화"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개혁은 근원적이고 파급력이 크다고 할 것인바, 만약 본 시범개혁이 국가적으로 확대, 실행된다면 중국 해외투자의 모습이 깜짝 놀랄 수준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번 개혁이 시범지구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공언하였으므로, 이번 시범지구의 출범은 중국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제안된 개혁수단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일부는 점진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딜로이트는 관련 당국이 잠재적 투자자들에 대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기존 사례 - 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그 규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즉 사업의 내용을 규정의 틀안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 새로운 변화(예상) - 더 "기업친화적"이고 "시장주도적"인 규정. 정부는 투자자들을 초대해서 "어떤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투자자와 산업을 위해 시범지구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을 위해 시범지구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투자자들과 건설적인 논의를 위한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변화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은 법령이 발표되어 나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부기관들과 예상되는 투자와 희망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협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부록 1: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의 예상 영향

설립*	계속적인 보고의무*	금융(해외외환통제, 그룹의 재무와 계열사간 결제 활동 포함)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 외부의 기업과의 거래		특별 조세 혜택
		중국 본토 (중국(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 제외)	경외	중국 본토 (중국(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 제외)	경외	
"부정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승인 불필요 (보고만 요구됨)	매우 단순화	명확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현재 규정과 동등	인민비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자율 자유화 등 중요하게 완화	명확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현재 규정과 동등	거의 제한 없음. 있다면 업데이트 되고 간소화된 제한 관세 절차	향후 공표될 예정임

*해외투자기업은 국내기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바 현재 규정 상으로도 국내 기업들은 설립과 지속적인 보고의무에 있어서 몇 몇 승인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록 2: 투자 승인 절차의 개혁

해외로부터의 중국내 투자 승인절차: 중국 내 투자

	보고 의무로 대체될 사전 승인 사항
외상독자기업 (WFO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분할, 합병 및 기타 중요 구조조정 • 영업 지속기간

합자기업(EJ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JV 합의서/계약서와 제휴조항 포함) • 영업기간의 연장 • 해산
합작기업(CJ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JV 합의서/계약서와 제휴조항 포함) • JV 합의서/계약서와 제휴조항의 중요한 변동 • JV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의 양도 • 경영진의 임명 • 영업기간의 연장

개방되는 서비스 산업 분야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의 출범시부터 유효한 시범방안들	출범이후 점진적으로 실행될 시범방안들
금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및 의료 보험: 해외기업 참여 허용 • 금융리스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적기구(SPV)의 최소 등록자본 요구액 삭제 - 주된 영업과 관련된 상업적 팩토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을 합자기업 뿐만 아니라 외상독자기업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허용 - 제한된 허가증을 가진 은행의 설립 허용
해운과 물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관리회사: 100% 해외 참여 허용 • 국내 투자기업에 의해 소유된 해외 선박은 상해항과 다른 중국 항 사이의 연한 해운에 참여하는 것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해운회사: 해외 참여자에 대한 제한 완화
상업 및 무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터테인먼트와 게임콘솔의 제조와 판매: 해외 참여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통신서비스: 자격을 갖춘 해외투자기업에 특정 산업 참여 허용 • 골동품 경매: 자격을 갖춘 해외투자기업에 허용
전문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회사: 해외 참여 허용 • 합자지주회사: 해외 참여 허용 • 해외관광사업활동(대만제외):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 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법무법인의 진출: 중국 법무법인과 더 밀접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모색하고 있음

	<p>등록된 적격 합자기업 형태의 에이전시에게 개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관리(HR) 에이전시: 해외 참여 제한과 외상독자기업과 합자기업의 최소등록자본금 요구액 완화 • 시범지구 안에 등록된 외상투자 기술 디자인(기술 조사 제외) 기업: 상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해 관련 자격요건의 최초 적용 요구사항의 완화 • 시범지구에 등록된 외상독자 건설기업: 해외 참여 정도와 무관하게 상해에서 진행되는 중국과 해외의 합자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 허용 	
문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장소와 예술인 에이전시: 100% 해외 투자 허용 	
공공분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훈련 기관과 직업 기술 교육 기관: 합작기업 허용 • 의료 기관: 100% 해외 참여 허용 	

해외 투자 승인제도: 중국의 투자

	보고 의무로 대체될 사전 승인 사항
중국외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지방정부의 승인 기준치 안에서의 중국외 투자와 해외 자회사 설립

기타

	시범 조치들
공상국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납입 자본"제도 대신에 "공칭(公稱)자본"제도. 이 제도하에서 투자자는 현재의 엄격한 자본금 부담 요구사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도 최저자본금 납입을 없애거나 낮춤으로써). • 등록이 간소화되고 더 효율적이 될 것임 • 회사의 등록은 승인과 분리될 것이며, 승인은 특정 프로젝트와 특정 범위의

	사업에 대해 필요할 경우에만 이루어 질 것임 • 연검 절차는 개혁될 예정
--	---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를 국제 무역, 해운과 운송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범 조치들

	시범 조치들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 고부가가치와 최신기술의 유지관리 서비스: 시범적 실시 • 국가간 e-business: 관세, 조사와 검역, 세금환급, 국가간 지불 및 운송를 지원하는 전자지원시스템의 구축 • 재화에 대한 무역거래: 수입관세신고 이전에 운송서류만으로도 재화가 시범지구안으로 수입될 것임 • 국제 이송, LCL 과 Distribution services: 진출 기록과 신고서 형식의 간소화 • 보세화물들을 위한 전시와 거래 플랫폼: 시범지구에 설립 예정 •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의 E-fence: 구축될 것임
조사와 검역(CI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 자 조사 기관: 조사결과의 인정 • CIQ 절차: 수입전 조사, CIQ 등록, 수입된 소비재의 조사와 수출입 산업재에 대한 "speed check"의 도입을 통해 절차가 빨라질 것임
해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송(Transition)과 LCL 산업: 향후에 지원될 것임 • 해운 금융, 국제 해운, 국제선박관리와 중개: 시범지구안에서 장려될 것임 • 국제화물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기들: 푸둥국제공항의 비행기편수가 증가될 것임.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를 금융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범 조치들

	시범 조치들
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한 위험관리 하에서 자본계정에 있는 RMB 의 태환을 지원함 • 국가간 RMB 의 사용을 개혁함 • 시범지구안에서 이자율을 자유화하고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자산 pricing 결정을 허용함 • 무역, 투자와 금융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외국환거래 지원 시스템 도입을 시도함
선물과 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 보증금 금융과 같은 실물거래가 수반된 선물에 대해 시범거래를 확대함 • 점진적으로 해외기업의 상품 선물거래 참여를 허용함 • 해운화물지표(Shipping Freight Index) 파생상품 거래의 개발을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 혁신을 장려함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보험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간 RMB 재보험 사업 활동을 장려함
거래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금융 거래 플랫폼을 구축 • 국제적인 대규모 상품 거래소와 자원 분배 플랫폼 개발 • 자본 에스크로(escrow) 기관의 종합 금융서비스플랫폼 구축을 허용
사모투자(Private equ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지구안에서 해외 자본 투자를 목적으로하는 특수목적기구의 설립을 장려함 • 투자자들이 해외 자본투자를 수행하는 funds of funds 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함
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 수취 및 지급에 있어서 서비스 거래에 대한 특별 계정의 기능을 확대하고 금융 기능을 개발함 • 다국적기업들의 지역 또는 세계적 글로벌 재무 센터 설립을 장려함

Korean Service Group in Shanghai

徐祖明 파트너

Jeff, Xu

Tel: +86 21 6141 1278

Email: jexu@deloitte.com.cn

함지원 이사

Ham Jiwon

Tel: +86 21 6141 1468

Email: jjham@deloitte.com.cn

최근호 이사

Choi Gun Ho

Tel: +86 21 2316 6237

Email: guchoi@deloitte.com.cn